



청소년 노동과 산업보건

한림대 성심병원 산업의학과 / 임 형 준

글 쓰는 순서

- ① 취약계층 근로자의 정의 및 국내 실태 ② 비정규직 근로자의 건강 ③ 이주노동자와 산업보건
- ④ 청소년 노동과 산업보건 ⑤ 여성 근로자의 건강 ⑥ 고령 근로자의 건강
- ⑦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정책적 대안

20년 전 1988년 5월 11일자 동아일보 15면에는 “온도계 공장근무 15세 소년 두 달 만에 수은 중독”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짧은 기사였지만 이로 인한 반향은 커서 그 결과 여러 사회 제도, 특히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제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온도계 제조회사에서 일하던 15세 소년이 취업 두 달 여 만에 수은중독 및 신나중독으로 밝혀져 노동부가 이 회사 전종업원에 대해 특수검진을 실시토록 지시했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협성계공 종업원 문송면 군(15세, 충남 서산군 태안읍)은 지난해 12월 5일 이 회사에 입사, 온도계 수은 주입, 압력계 신나 세척작업을 해오다 심한 두통,

요통과 불면증에 시달려 지난 2월 8일 휴직한 후 한 달 뒤인 3월 9일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수은 및 신나 중독으로 밝혀졌다. 협성계공은 종업원 1백여 명의 중소기업으로 한림대부속 한강성심병원이 지난 2월 이 회사의 작업환경을 조사한 결과, 작업장 바닥에 수은방울이 흩어져 있었으며 공기 중 수은농도도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문송면 군 사건이었다. 문송면 군은 일을 해 돈을 벌면서 야간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고향에서 서울로 상경하여 일을 하던 중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다.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에는 “문송면 사망 사건”이라는 항목에서 이 사건의

발생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문 군은 만 15세로서 ‘근로기준법’ 상, 중금속 등을 다루는 유해공정에 취업이 금지되어 있었다. 미성년자인 18세 미만의 연소자의 취업을 법으로 제한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성인에게 요구되는 판단력, 주의력 등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주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노동부는 이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문송면 군의 사건은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부에서는 산업보건을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었고, 정부기관으로 직업병 연구소가 설립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과 건강

검진제도의 개선, 노동자 참여의 확대라는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참고: 국가기록원 나라기록포털, 문송면 수은 중독 사망).

산재보험통계를 통해 본 청소년 산재의 변화 추이

그렇다면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일하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환경은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보호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직접적인 지표는 없으며, 노동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산재보험통계를 통하여

〈표 1〉 18세 미만 산업재해 및 사망재해 발생건수(1992-2007년)

연도	전체 재해	전체 재해(18세 미만)	전체 사망	전체 사망(18세 미만)
1992	107,435	450	2,429	4
1993	90,288	254	4,227	19
1994	85,948	195	3,411	17
1995	78,034	196	3,241	14
1996	71,548	107	2,483	5
1997	66,770	228	2,742	3
1998	51,514	144	2,212	2
1999	55,405	193	2,291	3
2000	68,976	68	2,528	2
2001	81,434	99	2,748	5
2002	81,911	104	2,605	2
2003	94,924	69	2,923	1
2004	88,874	53	2,825	3
2005	85,411	62	2,493	2
2006	89,910	96	2,453	1
2007	90,147	123	2,406	1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따름이다. 노동부의 산재보험통계 중 18세 미만 청소년의 산업재해발생건수는 (표 1)과 같다.

1991년 이전의 산재보험 통계는 연령구분을 20세 미만으로 하여, 18세 미만 청소년의 발생 건수만을 분리해서 볼 수 없는 한계가 있다.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전체재해 중 18세 미만의 재해는 1992년 450명에서 2007년 123명으로 줄었으며, 이 중 사망재해는 1993년 4명에서 2007년 1명으로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년에 1~2명의 청소년 노동자 사망 재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견상으로 보이는 청소년 재해 건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 글의 뒷부분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청소년 노동을 대상으로 한 일부 조사와 재해 피해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사례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하여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노동 중 재해를 당하더라도,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에서 실제 드러나지 않은 피해

사례가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면의 한계로 자세한 업종을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업종별로 봤을 때,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재해건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이 전체 재해의 수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기타 사업에서의 재해는 1992년 20건에서 2007년 117건으로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 사회의 일자리가 제조업보다는 기타 사업에 속하는 서비스업에서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며, 또한 청소년 노동의 많은 부분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부재하다면, 이 분야에서의 재해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본 청소년 노동 환경

2007년 12월에 열렸던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에서 노동건강연대 회원인 이상윤 산업의학전문의는 발제문에서 최근 들어 중·고등학생들이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일자리의 성격도 IMF 이전의 용돈 벌이 수단에서 최근에는 생계형 일자리로 바뀌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경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논문에도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 공통으

로 속한 청소년 2,910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34.1%가 중2~고2 기간 동안 적어도 한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중학교 때는 '전단지 돌리기'가, 고등학교 때는 '음식점 카운터, 서빙, 배달 업무'가 가장 많았다고 하였다.

노동건강연대가 20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81명 중 45%에 달하는 449명의 학생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아르바이트 종류로는 음식점 서빙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패스트푸드점(14.3%), 각종 배달(11.5%) 순이었으며, 그 외에 주유소, 전단지 배포 등 다양하였다.

일자리에서 경험한 부당한 대우나 폭력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가 청소년임에도 하루 9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31.4%로 많았으며, 급여를 제 때에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12.7%, 한편, 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21.6%가 일하면서 조롱이나 욕설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적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각각 4.7%, 2.7%, 1.6%에 달했다고 보고하였다.

일자리에서의 사고 경험을 물어보았을 때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16.7%가 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아르바이트 종류별로 사고 경험률을 봤을 때는 각종 배달 업무에 종사했던 청소년에서 36.1%로 가장

높아, 특히 배달 업무에서의 안전 확보가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는 패스트푸드점 24.4%, 음식점 19.3%, 주유소 8.0%의 순이었다. 사고의 종류는 교통사고가 4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상이 33.9%로 많았다. 직종별로는 교통사고는 배달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하였고, 화상은 패스트푸드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이후 치료를 받은 경우를 물어보았을 때, 사고 경험자의 18.4%가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17.1%는 병원 외래 치료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해결방식은 내 돈이나 부모님 돈으로 해결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32.3%에 달했으며, 산재보험으로 해결하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8.1%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으로 해결한 이들 중 4명은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였고, 나머지 1명은 음식점에서 찢림 혹은 베임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치료비를 산재보험으로 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의 58%가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잘 몰라서라고 응답하였으며, 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학교에서 교육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응답자의 68.8%가 그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사례조사를 통해 본 청소년 노동 환경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아르바이트 도중 산재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를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하였는데,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받은 학생들의 경우에도 부모님이나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처리하였다고 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를 받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주가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병원 진단서를 끊어 산재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청구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은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몇 개의 사례이다.

(18세, 남자,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로 치킨집, 피자집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하였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배달이 많아 밥 먹을 시간도 없었고, 피자 한 조각 짬내서 먹는 것이 다였다. 시급은 4,000원이었고, 사고는 치킨집 배달 시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오토바이 보험을 들어줘서 보험처리를 하였으며, 사고 후 잘리지는 않았다. 많이 일할 때는 12시간씩 일하였으며, 방학 때 일주일 동안은 매일 12시간씩 일했다.”

(18세, 남자, 음식점 서빙, 주방일)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일도 해 봤으나 그 중 제일 힘들었던 것은 웨딩홀 뷔페에서 서빙한 것이었다. 시급은 4,000원이었으며, 하루에 일한 시간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씩 일하였다. 쉬는 시간은 밥 먹을 때만, 따로 정해진 시간은 없었다. 웨딩홀이다 보니 주말에만 일했다. 사고가 난 곳은 패스트푸드점이었다. 고기 굽는 기계를 청소할 때 뜨거운 기운이 닿아서 팔에 화상을 입었다. 병원엔 안 가고 일한 곳에서 약 사다 주고 바르라고 하고, 밴드 사서 붙이라고 주어서 그걸로 치료했다. 흉터가 아직도 크게 남아 있다. 다쳤을 때 병원 진단서를 첨부해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

(18세, 남자, 피자 가게 배달) “고등학교 재학 중이며,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2006년에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2달 정도 되어서 배달 도중 앞에 차가 끼어들어 피하다 앞 차와 충돌사고를 당했다. 얼굴에 찰과상과 오른팔 뼈가 부러져 5주 정도 치료를 받았다. 사용주가 산재처리를 하겠다고 하여 산재보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모든 과정을 사용주가 처리해 주었다. 산재보상은 치료비만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날이 어린이 날이어서 매우 바쁘게 일하다 보니 지금 된 안전모도 쓰지 않고 쉴 틈도 없이 배달

나가던 중에 일어났다. (본인이) 주의하지 못했던 점도 문제였지만, 쉴 틈도 없이 일을 시키다가 벌어졌으니 사업주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평일은 방과 후 6시간 정도, 주말은 아침 11시부터 밤 11시까지 12시간 정도 일한다.”

청소년 노동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규정과 규정준수 실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다. 근로기준법에서 특별보호를 하고 있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 15세 이상이라도 중학교 재학중이거나 만 13세 이상 14세까지의 청소년들은 노동부에서 취직인허증을 받은 경우에만 일할 수 있다.

또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을 해도 좋다는 부모님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 노동을 위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도 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일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다. 일을 할 수 없

는 곳은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소주방, 호프, 카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이용업, 만화대여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소각, 도살업무 등이다.

근로시간도 제한하고 있어,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으며, 초과 근로는 1일 1시간, 1주일 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청소년은 야간근무를 할 수 없으나 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동의하고 노동부로부터 야간에 일해도 좋다는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야간, 초과근무시간에는 평일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휴가와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도 정해져 있어, 휴가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일하기로 정한 날에 개근하였으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으며, 휴게시간은 하루에 4시간 근로하는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쉴 수 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다.

이상에 기재한 모든 내용은 노동부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위하여 제작한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2007년 7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노동에 대해 노동부가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600개소에 이르는 점검 사업장의 68.3%인 410개 사업장에서 715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였는데, 주요 법 위반 내용으로는 근로조건 미명시가 259건(36.2%)으로 가장 많았고,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09건(29.2%), 최저임금 위반 69건(9.7%), 야간근로금지 위반 38건(5.3%), 근로시간 위반 23건(3.2%), 연장야간수단 미지급 23건(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제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과 관련된 안전보건 상황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무슨 문제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청소년 노동에서 안전보건 개선을 위해서는 여러 부문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계 부처 즉 노동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업장에서 청소년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을

충실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노동의 실태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노동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의 축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 대상의 설문조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 현황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며, 정보의 소재처도 군데군데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청소년 노동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적합한 대책을 세우는데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비로소 청소년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업종을 파악하고, 또한 사고 등 안전보건 문제가 다발하고 있는 업종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휴가, 휴게시간, 근무시간, 야간, 초과, 휴일 근무 시 추가 임금 지급 등)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일부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통하여 밝혀졌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에서의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고등학교의 정규수업 시간에 일부 시간을 할애하여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 일부 개발된 교육자료가 있으나 그 내용과 양에서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교육내용과 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절한 노동안전보건 수준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을 전하여 줄 수는 있으나, 실제 사업장에서 청소년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야 할 청소년들에게 이른 시절부터 사회에 대한 좌절감과 냉소감만을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관리자와 사업주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 및 홍보를 통해서 이러한 규정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청소년 노동의 안전보건문제를 논하기 위하여, 산재보험 자료 분석, 최근의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 연구를 정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청소년 노동 보호를 위한 제도 현황과 간략한 제언의 순으로 알아보았다.

부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글을 읽으시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청소년 노동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끝맺고 싶다. 🍀